캔베라 어코드 (캔버라 협정)
규칙과 절차

2009년 4월 23일 승인
2009년 4월 23일 발효
2012년 수정 보완

규칙과 절차

차례

서론.....04
1.0 특성, 원칙, 회원에 대한 공통 적용 기준.....04
1.1 일반사항.....04
1.2 합의사항.....05
1.3 인증의 기준.....05
1.4 INQAAHE 의 good practice 가이드라인.....05
1.5 UNESCO-UIA 건축교육헌장.....06
2.0 실사절차.....07
2.1 정회원 단체에 대한 정기 실사
ㄱ. 정기실사 과정과 일정
ㄴ. 실사위원과 그 책무
ㄷ. 정기실사 문서
ㄹ. 실사방문
ㅁ. 실사보고서
ㅂ. 실사의 결과
ㅅ. 재심청구
ㅇ. 실사비용

2.2 조건부 회원에 대한 심의
ㄱ. 조건부회원 지위 신청
ㄴ. 최초 문건
ㄷ. 조건부회원 전환실사방문 및 문서
ㄹ. 조건부회원 전환실사팀과 책무
ㅁ. 조건부회원 전환실사방문 보고서
ㅂ. 조건부회원 전환실사방문의 결과
ㅅ. 재심청구
ㅇ. 전환실사경비
ㅈ. 조건부회원의 참여
ㅊ. 정회원으로의 전환

2.3 새로운 인증시스템에 대한 후원 (mentoring)
ㄱ. 자문 실사
ㄴ. 사무국의 자문
ㄷ. 자문실사 보고서

ㄹ. 정회원단체 실사참관
ㅁ. 경비

2.4 정회원단체 실사 위원회
a. 정회원단체 실사위원 지명과 선정
b. 정회원단체 실사팀 구성

2.5 보고서에 대한 정책가 표준양식
3.0 총회.....19
4.0 의장.....19
5.0 사무국.....20
6.0 소통방법과 협정 홍보.....20

부록 A: 초기 정기실사 일정.....22
부록 B: 정기실사 보고서 양식.....23
부록 C: 조건부회원 실사 보고서 양식.....32
부록 D: 자문 실사 보고서 양식.....40
부록 E: 실질적 동등성 (Substantial Equivalency)의 성격, 원칙, 기준.....50
부록 F: 용어의 정의.....55

규정과 절차

서론

"인증"은 교육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일정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확인 절차다. 캔버라 어코드의 회원단체는 각 단체의 건축교육 인증 시스템이 상호 공통점이 있으며 각 단체의 건축교육 프로그램들은 건축실무가 요구하는 학문적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CA 가 인정하는 인증기구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good practice 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 받은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능력을 포함하는 일정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시스템 디자인, 운영, 개선, 과정, 그리고 환경에 관하여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
2. 복잡한 건축적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3. 건축이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암시적 영향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
4. 건축주, 동료,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능력;
5. 졸업 이후 평생교육과 전문능력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
6. 건축실무의 윤리적인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기량;
7. 현대사회에서 더 낳은 환경을 지지하는 기량(ability).

본 협정은 국제적인 품질보증기관들이 벤치마크로 채택한 '고등교육 품질 보장 네트워크' (INOAAHE)의 'good practice' 지침(아래 1.4 절에 기술한 요약)을 협정의 중심 원칙으로 받아 드리고; 건축실무를 위한 학문적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벤치마크로서 'UNESCO-UIA 건축교육헌장 2005 년 수정본' 1.5 절 에 기술한 원칙과 'UIA 건축실무 국제기준에 관한 권고 사항 협정' 중 해당 부분을 받아 드린다.

1.0 특성, 원칙, 회원단체에 대한 공통 적용 기준

1.1 일반사항

본 협정이 인정하는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증기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다.

가. 건축관계 단체를 대표하며 법적 지위를 갖추고 공식적 명칭을 가진 단체; 혹은 당해 지역의 법규 (규정)나 실무규정이 교육인증을 건축사자격 시험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 그 해당 지역에서 필수적인 교육인증요건을 수행하도록 인정된 전문단체

나. 교육기관이나 건축단체, 인증을 부여하는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된 단체

다. 확립된 방법과 절차 그리고 분명한 실적을 갖춘 활동적이고 건실한 인증단체

라. 충분한 경험과 실적을 가진 단체 (통상적으로 5 개 이상 프로그램 인증 실적과 7 년 이상 경험)

1.2 합의사항

인증기구는 다음을 포함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가. 인증기구는 항상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목표의식을 가진다.

나. 인증과정은 투명하고 또 일관성을 가진다.

다.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은 객관설과 일관성을 위하여 확립된 절차와 조건에 의거하여 실행된다.

라. 인증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충분한 능력과 지식을 갖춘다.

마. 인증은 학교전체가 아닌 개별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시된다.

바. 인증은 '동등한 자격의 동료 실사위원'들 (peer reviewer) 이 실행하고 자체평가서의 검토, 프로그램 방문, 학생들의 과제물에 대한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사. 인증을 결정하는 기준은 표준적인 학생 성과물이다.

아.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물리적, 재정적, 인적, 정보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1.3 인증의 기준

인증기준은 다음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가. 적절한 교육 환경

나. 프로그램의 적절한 지도력

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수진

라. 광범위한 건축실무 준비를 위한 교과 과정

마. 적절한 입학, 진급, 수료/졸업을 위한 기준

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인적, 물리적, 재정적, 정보자원

또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인증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재평가

아. 건축실무에 입문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기술, 능력, 태도(마음가짐) 등의 습득에 필요한 대학 혹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기간. 균형 잡힌 교과과목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이 교육기간은 5년 전일제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4 INQAAHE 의 'good practice' 지침

인증원은 외부품질보증기관으로 아래에 요약된 바와 같이 INQAAHE가 제정한 'good practice'의 지침을 받아드려야 한다.

EQAA(외부평가보증기관)는

가. 문화적 역사적 관점을 포함하는 사명과 목표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사명과 인증방법에 따라 외부사정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

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다

다. 자체 활동의 계속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며 이 체갸는 변화하는 고등교육, 효과적인 운영, 목표달성을 위한 공헌 등에 대한 유연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라. EQAA의 규칙이나 관습(cultural context)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대중의 요구에 대응하며

마. 학교와 프로그램의 품질이나 품질보증은 고등교육기관의 의무임을 인지하고; 학교와 프로그램의 학문적 자율성, 독자성, 성실성을 존중하고; 이해 당사자와의 정당한 논의에 따라 경정된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의 질적 향상과 책무 확립에 이바지하며;

바. EQAA가 학교에 기대하는 바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문서를 구비한다

사. 목적, 절차, 과정, 그리고 자체평가 과정에서의 기대치 등을 설명하는 자체평가보고서에 관한 문서를 확보한다. 이 문서는 사용되는 표준, 결정의 기준, 보고서의 형식, 그리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다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아. 사용되는 표준, 평가의 방법과 과정, 결정 기준, 그리고 외부평가에 필요한 다른 정보를 기술한 명료한 문서를 구비하고

자.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서와 숙달된 동료(peer)나 관계 범령 등에 의한 판결 등 외부 참고자료를 포함한 평가 자료를 구비한다

차. 재심청구 정책과 방법을 명기한다.

카. 가능한 경우, 훌륭한 정책, 역량 축적, 결정의 검토, 범국가적 교육의 제공, 협업작업, 인적 교류 등을 위하여 다른 EQAA와 협력한다

타. 다른 곳에서 받아드리거나 외부로 내 보내는 고등교육과 관계되는 정책을 마련한다.

1.5 UNESCO-UIA 건축교육헌장

인증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취도의 표준과 'peer group review'를 통한 평가의 수단을 확립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다양성, 혁신, 발전을 장려하여야 하는 일이다. 이 협정의 핵심적 원칙은 적절한 국제적인 표준의 수용과 다각도의 접근을 장려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회원단체는 UNESCO-UIA 건축교육헌장의 핵심적인 원칙들을 받아 드려야 한다. 특히 회원단체는 교육헌장에서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총체적인 기술과 지식, 그리고 역량을 학생들이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심미적 기술적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축설계 창작 능력.
2. 건축의 역사와 이론, 건축에 관계되는 예술, 기술, 인문과학 분야의 적절한 지식
3. 건축설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미술에 대한 지식
4. 도시설계, 계획, 그리고 계획의 과정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적절하게 숙련된 기능
5. 사람과 건물, 건물과 주위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 등을 인간의 요구와 휴먼 스케일(인간척도)에 대한 이해
6. 건축 전문직과 건축가의 사회적인 역할, 특히 사회적인 요인 등을 고려한 건축 프로그램의 작성에 관한 역할에 대한 이해

7.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조사 방법과 설계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
8. 건물 디자인과 관련되는 구조 디자인, 공사 방법, 공학적 문제에 대한 이해.
9. 실내공간을 외부 기후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리적 문제, 기술, 기능에 대한 적절한 지식.
10. 제한된 공사비와 건축법규의 제한 속에서 건물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기술
11. 건물의 개념을 실제적인 건물로 발전시키고 건물 계획이 전체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산업, 조직, 규정 그리고 절차에 대한 적절한 지식

아울러 아래와 같은 특기사항들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간, 사회, 문화, 도시, 건축, 환경 등의 가치와 건축유산에 대한 책임의 인지
2. 생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환경을 보호하며 복원하는 수단에 대한 적절한 지식
3. 건축에 관계되는 시공 분야와 기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 기술에 대한 창조적 능력 개발
4. 프로젝트 재정, 프로젝트 관리, 공사비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의 제작/납품에 대한 적절한 지식
5. 건축을 배우는 과정에서 건축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에게 필수적인 연구 기법에 대한 훈련.

2.0 실사 절차

2.1 정회원 단체에 대한 정기 실사

정회원단체가 관장하는 모든 인증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정회원단체실사'를 받아야 한다. 실사와 다음 실사의 사이는 6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사위원은 다른 정회원단체에서 선정된다. 사무국은 정회원단체 실사 실행 계획과 절차, 피 실사단체의 자체보고서, 필요한 문서, 및 실사보고서를 관장한다. 실사 계획 예정(schedule)과 절차의 채택이나 변경은 정회원의 2/3 이상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피 실사단체는 정해진 예정 준수와 필요한 서류 준비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a. 정회원단체정기실사 과정과 일정

사무국은 최소한 9개원 이전에 예정된 실사를 피실사회원단체에 통보하고, 피실사회원단체는 실사의 과정과 구체적 일정 및 준비사항에 관하여 사무국과 논의한다. 실사과정에는 인증 상태에 있는 건축전문학위 프로그램의 계속인증실사 참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해당 실사결과를 논의하는 인증위원회의 회의를 참관하도록 한다. 피실사회원단체는 정회

원단체실사팀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실사의 과정과 절차를 참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문적인 성과와 표준에 대한 평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문서에의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부록 A: 초기 정회원단체실사의 모형일정을 참조할 것.

정회원단체는 인증 기준, 정책, 혹은 절차를 변경한 경우 이 변경 내용을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은 이 내용을 다른 정회원단체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정기실사위원과 그 책무

정기실사팀은 본 협정을 대표하는 2인 (학계 1인과 실무자 1인)과 피실사회원단체가 추천하고 본 협정이 동의한 현지보조위원 등 모두 3인으로 구성된다. 정기실사위원은 영어에 능통하여야 하고 현지보조위원은 영어와 피실사회원단체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협정을 대표하는 정기실사위원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모든 정회원 단체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피실사회원단체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다. 사무국은 선정된 실사위원의 자격을 피실사회원단체에게 통보한다.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경우 피실사회원단체는 2인 중 1인의 정기실사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아래 항목 참조) 이러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사무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해의 상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피인증단체가 인증한 학교를 졸업한 경우
2. 피인증단체가 인증한 프로그램의 교수진이나 행정직과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람
3. 피인증단체가 인증한 프로그램에 재직한 사람 (예: 강사, 외부감사, 초빙 크리틱 등)
4. 피인증단체가 인증한 프로그램에 연관된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가 있는 경우
5. 피인증단체의 형태나 그 단체가 소재한 지역, 피인증단체의 평판이나 기본철학에 대한 편견 또는 피인증단체가 인증한 프로그램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 등 등.

c. 정기실사 문서

정기실사는 다음과 같은 문서의 평가를 포함한다.

1. 인증조건, 인증기준과 절차 (이와 동등한 문서 포함)의 변경내용과 본 규칙과 절차 1.0절의 내용 시술된 관점에 비추어 본 변경 이유와 경위; 최근 인증시스템이 당면한 문제점과 이 문제점에 대한 인증시스템의 대응; 그리고 가까운 장래 (1-5년)안에 생길 것으

로 예상되는 중요한 쟁점 확인.

2. 피인증단체의 인증 기준, 정책, 절차에 관한 최근의 또 적절한 문서. 실사를 위한 계획, 정기실사팀의 선정과 교육, 실사확정(ratification) 과정, 등 피인증단체가 지속적으로 본 협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정회원단체실사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위의 c.1항에 적시된 자체평가서는 10 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자체평가서와 증빙/보충자료를 포함한 전체 파일의 크기는 2MB 이내로 제한한다.

d. 정기실사방문

정기실사위원과 현지보조위원은 피실사회원단체가 프로그램의 실사를 진행할 때 정기실사팀과 동행하여 실사를 참관한다. 피실사회원단체는 전시된 학생 성과물을 통하여 인증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이나 그 정도가 현행 다른 정회원단체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점을 정기실사팀에게 증명(demonstration)하여야 한다.

정기실사위원과 현지보조위원은 피실사회원단체의 사무국을 방문하여 절차를 검토하고 사무국은 인증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회의록을 정기실사위원에게 제공한다.

e. 정기실사보고서

실사위원은 사무국이 제공하는 실사에 적절한 양식(부록 B)에 따라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정기실사팀은 프로그램실사를 참관한 내용과 문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대외비 권고안'을 작성한다.

정기실사보고서는 사무국으로 제출된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사무국은 피실사회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보고서(대외비 권고안 제외)를 검토하고 이 보고서를 정회원단체에게 제출한다.

f. 정기실사의 결과

정기실사팀이 채택할 수 있는 권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실사 결과 피실사단체는 6년간 다른 정회원단체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승인하도록 권고하거나, 혹은

2. 부족한 점이나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이 지적 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다른 정회원단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사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였을 경우 3년의 기간을 인정하도록 권고하거나

3. 정기실사팀이 피실사회원단체의 특성(characteristic), 기본원칙(principle), 그리고/또는 회

원단체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criteria, 본 규정 1절 참조) 등 항목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 피실사회원단체는 즉시 조건부임시회원 자격으로 강등되도록 권고한다. 이 경우에는, 당초 실사로부터 2년 이내에 재실사를 실시하며 재실사팀에는 당초 정기정기실사위원 중 한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실사의 결과에 따라 실사팀은 1) 해당 회원단체의 정회원 자격을 회복시키거나, 2) 조건부임시회원자격을 거두어 드리고 협정으로부터 제명한다.

자격정지를 위한 제안의 동의는 회원단체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의 자격정지 이전에 프로그램을 졸업한 졸업생의 자격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자격정지는 정회원단체 전체에서 한 표를 제외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명된 인증단체는 제명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조건부임시회원의 자격을 재 신청할 수 있다.

정기실사팀의 권고안은 협정의 모든 회원단체 전체가 참여 하는 음성전화회의, 이메일, 혹은 대면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이 투표는 어느 방법을 사용하던지 사무국이 주관한다.

g. 재심청구

회원단체는 정기실사방문에 관한 여러 실행내용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는 회원단체는 재심을 청구할 때 아래 2가지 중 하나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여야 한다.

- 결정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 정기실사팀이 정해진 규칙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 것이 최종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피실사회원단체가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시간 안에 사무국이나 정기실사팀에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없다.

재심에 대한 판결은 본 협정의 전체 회원단체의 참여 아래 진행된다.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을 요청한 당해 정기실사결과에 대한 결정은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재심의 모든 과정은 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청문(발언) 절차는 없다.

1. 재심의 시작:
   a. 재심청구는 실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회원단체 사무국의 최고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b. 재심 청구는 협정 사무국에 제출한다.
   c. 재심을 청구하는 피실사회원단체는 실사의 결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협정이 인용

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사실, 그리고/혹은 정기실사팀이 적법한 규정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 것이 실사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d.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며 반송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e. 모든 날짜는 보통 달력 날짜로 계산한다.

2. 재심 절차:

a. 재심청구를 받는 즉시 사무국은 회원단체 중 1인을 본협정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이 대표자가 다음 총회에서 이 재심청구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전체 재심을 관장하도록 한다. 이 대표자는 당해 회원단체실사 혹은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또 당해 회원단체와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b. 협정대표자는 재심요구를 당해 정기실사팀에 보내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자료 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피실사회원단체의 주장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한다.
c. 협정대표자는 정기실사보고서, 당해 회원단체의 자체평가서, 당해 회원단체의 재심요청서, 및 정기실사팀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문제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재심청구검토서를 작성한다.
d. 협정대표자는 재심청구검토서를 당해 회원단체, 정기실사팀에게 보내고 다음 정기전화회의 혹은 정기총회의 의제로 상정한다.
    i. 상정된 의제는 다음과 같은 배경자료를 포함한다.
        1. 정기실사보고서
        2. 당해 회원단체의 자체평가서
        3. 당해 회원단체의 재심청구서
        4. 실사팀의 답변서
        5. 협정 대표자의 사건분석서
    ii. 당해 회원단체를 실사한 정기실사위원이 (총회에) 회원단체 대표자로 참석한 경우, 이 사람은 (재심안건에 대한) 적부심리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iii.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단체의 대표자들은 위의 배경자료를 검토하고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여부는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iv. 재심여부의 결정
        1. 재심이 승인되었을 경우 실사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발의한다.
        2. 새로운 제안의 근거는 기록에 제시된 자료에 국한된다.
        3. 실사의 재심에 대한 결정은 한 표를 제외한 만장일치의 찬성이 필요하다.
    v. 사무국은 재심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결정 내용을 당해 회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협정의 대표자는 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이 기록은 위 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vi. 이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다시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h. 회원단체실사비용

실사위원의 거주장소에서 실사장소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항공요금을 제외한 모든 경비는 피실사회원단체가 부담한다. 위 항공요금은 정기실사위원이 소속된 회원단체가 부담한다. 실사 당해국 안에서 필요한 정기실사위원의 교통과 숙식은 피실사회원단체가 부담한다.

2.2 조건부회원 지위에 대한 심의

a. 조건부회원 지위 신청
새로운 회원단체로 영입되려면 2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1. 1단계: 조건부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신청단체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회원 자격을 부여받는 단계.
2. 2단계: 방문 실사의 결과 및 회원단체의 투표에 따라 조건부회원 지위에서 정회원으로 전환하는 단계

조건부회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3. 2개 정회원단체의 추천서를 동반한 서면 신청서 제출
4. 사무국의 서류검토가 긍정적이고 한 표를 제외한 회원단체의 만장일치의 찬성

조건부회원 지위 신청서는 회원단체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2개 이상의 회원단체의 추천서와 함께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단체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한번 이상 기존 정회원의 인증실사를 참관하여야 한다.

조건부회원 지위를 신청하는 인증단체는 건축전문학위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과정, 정책, 그리고 절차가 다른 정회원단체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건부회원 지위를 획득하려는 인증단체는 충분한 인증경험과 운영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7년 이상의 경험과 5개 이상의 프로그램 인증)

조건부회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보통 2년 이상)이 지나면 당해 인증기구는 지위전환실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위전환실사의 대상은 당해 조건부회원의 인증 기준, 정책, 절차와 함께 위 지위유지 기간 동안 이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포함된다.

사무국은 최소한 9개원 이전에 신청한 조건부회원에게 예정된 지위전환실사 실행 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조건부회원단체는 지위전환실사의 과정과 구체적 일정 및 준비사항에 관하여 사무국과 논의한다. 지위전환실사과정에는 이미 인증된 건축전문학위 프로그램의 재(계

속)인증실사 참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참관한 실사의 결과를 논의하는 인증위원회의 회의를 참관하도록 한다. 피 실사단체는 지위전환실사팀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실사의 과정과 절차를 참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관계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피실사단체가 본협정의 회원단체로서 요구되는 특성과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성과물과 표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최초 문건

조건부회원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단체에 대한 최초심의에는 아래와 같은 문서들에 대한 사무국의 서류심사를 포함한다:

> 기존 자체평가서; 중요한 전략 계획; 인증조건, 인증기준, 현행 절차; 인증단체의 발전 경위, 본 규칙과 절차 1.0절에 기술한 내용에 기재된 본협정의 원칙에 부합 정도에 대한 분석 (부록 E 참조)

본협정의 실사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교신 내용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신청단체는 다른 정회원단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인증이 신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건실한 과정과 문서가 구비되어 있고 확실한 과정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조건부회원지위 신청서와 보고서는 인쇄문서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다음 총회가 열리기 18주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 c.1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자체평가서는 3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으며 자체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전자문서의 용량은 3MB을 초과하지 않는다.

정확한 신청서류의 성격은 사무국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청단체의 인증절차와 정책과 기준, 전체적인 운영의 틀, 현재 인증 받은 상태에 있는 프로그램의 명단 등이 기존 표준문서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면 가능하면 언제나 이 표준문서를 사용한다.

c. 조건부회원 실사방문 및 문서

지위전환실사의 대상은 조건부회원 지위 유지 기간(보통 2년 이상) 동안 사용된 당해 조건부회원의 인증 기준, 정책, 절차 와 함께 이 기간 동안 이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전환실사는 정회원단체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실행 되는 정기실사와 같은 순서를 따른다.

전환실사위원과 현지보조위원은 피실사회원단체가 프로그램의 실사를 진행할 때 실사팀과

동행하여 실사를 참관한다. 피실사회원단체는 전시된 학생 성과물을 통하여 인증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이나 그 정도가 현행 다른 정회원단체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함을 전환실사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환실사위원과 현지보조위원은 피실사회원단체의 사무국을 방문하여 절차를 검토하고 사무국은 인증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회의록을 실사위원에게 제공한다.

조건부회원단체의 정회원단체로의 전환실사는 아래의 문서에 대한 분석 검토와 2인(교수와 실무자 각 1인)으로 구성된 전환실사팀의 실사를 받아야 한다.

1. 인증조건, 인증기준과 절차 (이와 동등한 문서 포함)의 변경내용과 본 규칙과 절차 1.0절의 내용 시술된 관점에 비추어 본 변경 이유와 경위; 최근 인증시스템이 당면한 문제점과 이 문제점에 대한 인증시스템의 대응; 그리고 가까운 장래 (1-5년)안에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쟁점 확인.
2. 피실사회원단체가 현재 사용중인 인증기준, 정책, 절차 등 적절한 문서. 기타 피실사회원단체가 본협정의 기준을 준수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인증실사의 준비 및 예정, 인증실사위원의 선정 및 훈련, 인증결정 절차 등을 포함한다.

d. 조건부회원 전환실사팀과 책무

본협정을 대표하는 전환실사팀은 2인(교수 실무자 각 1인)과 현지보조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지보조위원은 피실사회원단체가 추천하고 본협정이 임명한다. 현지보조위원은 영어와 현지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전환실사팀은 피실사팀의 인증실사팀이 인증실사 방문 때 이 팀과 동행한다. 전환실사위원과 현지보조위원은 피실사단체의 사무국을 방문하여 절차를 실사한다.

본협정을 대표하는 전환실사위원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실확인을 위하여 피실사단체의 검토를 거친다. 사무국은 전환실사팀 위원명단을 사전에 피실사단체에 제출한다. 피실사단체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을 때 최대 1명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1절 b항 참조) 이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무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 조건부회원 전환실사방문 보고서

전환실사팀은 부록 C의 양식을 사용하여 전환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전환실사팀은 실사 동안 참관한 결과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대외비 권고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무국은 대외비권고안을 제외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피실사단체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단체에 배포한다.

f. 조건부회원 전환실사방문의 결과

전환실사팀이 선택할 수 있는 대외비 권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환실사결과 피실사단체는 기존의 정회원단체와 실질적으로 동등함을 확인하였으므로 피실사단체를 정회원단체로 전환하고 이로부터 6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것을 다른 정회원단체들에게 권고하거나,
2. 피실사단체가 다른 회원단체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받아 드리지 말고 향후 2년간 조건부회원 지위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거나
3. 정회원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지 않았을 경우, 피실사단체가 또 다시 전환실사를 받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를 상세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g. 재심청구

(2.1절 g항 참조)

h. 실사경비

항공여행비와 숙식비 등 실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피실사단체가 부담한다.

i. 조건부회원의 참여

조건부회원은 정회원단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사와 교류에 참여하여야 한다. 조건부회원은 모든 교신내용과 보고서를 받을 것이며 모든 총회에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초청받는다. 조건부회원단체의 대표는 투표권 없이 안건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j. 정식회원으로의 전환

전환실사팀이 정회원단체로의 전환을 권고한 조건부 회원단체에게는 정회원으로 전환될 자격이 주어진다. 조건부회원에서 정회원으로의 전환은 정회원단체의 만장일치 (한 표 제외) 찬성으로 확정된다.

정회원으로의 전환이 확정된 경우, 다른 회원단체는 이 단체가 정회원단체로 확정 받은 해 1월부터 새 정회원단체가 인증한 학사자격(academic qualification)을 인정한다.

조건부회원에서 정회원으로의 전환이 승인되지 않았으나 요구조건이 현저하게 개선되었고 정회원단체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이 조건부회원단체는 향 후 2년간 조건부회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당해 조건부회원이 주어진 기간 안에 요구조건을 충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진술서와 이를 실행할 계획표의 제출을 전제로 한다..

2.3 새로운 인증시스템에 대한 후원 (mentoring)

새로운 인증시스템을 발전시키려는 단체나 조직 혹은 신생 인증시스템은 사무국이나 정회원단체의 후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본협정과 관계되는 어느 단체나 기관에 비공식 후원을 요청할 수 있다.

a. 자문 검토

단체 혹은 조직은 사무국에 신청하여 검토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검토전문위원은 해당 단체를 방문하여 관계 문서를 검토하거나, 혹은 조건부회원이나 정회원 자격 획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기준으로 현재의 준수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검토전문위원은 현지보조위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현지보조위원은 현지어와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당해 단체가 선정하고 본협회가 승인한다. 이러한 자문 검토방문은 선택사항이며 조건부회원 지위 획득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문검토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당해 단체가 지불한다

b. 사무국의 자문

단체는 사무국 직원을 초청하여 조건부회원 지위 신청에 필요한 규칙과 절차 그리고 조건을 설명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문은 선택사항이며 조건부회원 지위 획득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무국자문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당해 단체가 지불한다

c. 자문심의 보고서

자문검토위원이나 사무국자문위원은 사용 자문검토방문과 사무국의 자문방문의 결과물로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단체가 사용하도록 한다. (부록 D 양식 참조) 보고서는 당해 단체가 보여준 바에 따라 조건부회원 혹은 정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의 성취도를 기재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자문서의 성격을 가지며 조건부회원 지위 신청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당해 단체는 후에 조건부회원 지위 신청 시 이 보고서를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보고서는 당해 단체에 대한 자료로서 회원단체에 배부된다.

d. 정식회원단체 참관

조건부회원 지위 자격을 신청하려는 단체는 정회원단체가 실시하는 인증실사에 최소 1회 이상 참관하여야 한다. 당해 단체는 정회원단체에 인증실사의 참관을 직접 요청하고 방법 및 절차를 논의한다. 이러한 참관은 조건부회원 지위 신청 자격의 필수 요건이다. 모든 소요경비는 조건부회원 지위를 신청하려는 단체가 부담한다.

e. 경비

검토자문위원이나 사무국이 검토자문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자문을 요청하는 단체가 부담한다. 이 비용에는 사무국 직원의 시간당 임금과 사무국에서 이 검토자문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사무국은 자문검토가 시작되기 전에 예상소요비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4 실사 위원회

a. 실사위원 지명과 선정

사무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각 회원단체는 교수 1인과 실무자 1인 등 2명의 실사위원 후보를 지명한다. 이 후보들은 다른 회원단체의 인증시스템, 조건부회원이나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려는 단체의 전환실사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한 실사후보의 장거리 여행 비용은 당해 회원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실사위원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인증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사 수행의 책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투표를 하는 대표들은 실사위원 후보로 지명하지 않는다. 실사위원 파견 요청은 각 회원단체는 1년에 한번으로 제한된다.

협정을 대표하는 실사의원은 사무국이 후보군 명단 중에서 선정한다. 실사팀은 교수 1명과 실무자 1명 등 모두 2명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이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실사위원이 피실사단체와 이해상층에 해당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b. 실사팀 구성

1. 정기 회원단체실사

정기 회원단체 실사팀은 본 협정을 대표 하는 교수 1명과 실무자 1명 등 2명과 현지보조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지보조위원은 피실사단체가 추천하고 본협정이 승인하며 현지어와 영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2. 조건부회원 전환실사

조건부회원단체 전환실사팀은 본 협정을 대표 하는 교수 1명과 실무자 1명 등 2명과 현지보조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지보조위원은 피실사단체가 추천하고 본협정이 승인하며 현지어와 영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3. 자문검토위원

자문검토는 선택사항이며 본협정 후보군에서 선정된 전문가 1명과 현지보조위원이 이를 수행한다. 현지보조위원은 피실사단체가 추천하고 본협정이 승인하며 현지어와 영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2.5 보고서에 대한 정책과 표준양식

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된 모든 실사의 내용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실사팀은 실사의 종결 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그러나 최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안에 실사보고서와 대외비 권고안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보고서 양식은 부록 B-D에 수록되어 있다.

a. 정기실사와 조건부회원 전환실사

정기실사와 조건부회원 전환실사 후 작성되는 실사팀의 대외비 권고안은 피실사회원단체를 제외한 모든 회원단체에 보고된다.

사무국은 각 회원단체에게 실사보고서와 대외비 권고안의 사본을 보낸다.

실사팀의 대외비 권고안의 채택은 한 표를 제외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이루어 진다.

b. 자문검토 (Advisory reviews)

자문검토의 종결에 따라 자문검토위원은 자문검토 보고서를 당해 단체에 제출한다. 이 회원보고서는 다른 단체에는 제출되지 아니한다. 이후 이 단체가 조건부회원 지위 자격을 신청할 때, 당해 단체가 이 보고서를 증거물의 하나로 제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

보고서는 모든 회원단체에게 배포된다.

3.0 총회

회원단체의 대표가 모이는 총회는 보통 최소 2년에 한번씩 열린다. 총회의 장소와 시간은 회원단체와 논의를 거쳐 사무국 혹은 전화회의에서 결정된다. 총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총회가 열리기 최소 2개월 이전에 사무국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회의 일정과 관련 문서는 총회 시작 전 1개월 이전에 각 회원단체에 전달되어야 한다.

대표가 모이는 대면회의가 결정되었을 경우, 시간과 장소는 가능한 한 회원단체의 여행거리를 단축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편리하다면 총회는 대규모국제회의나 혹은 이와 유사한 행사 직후에 열릴 수도 있다. 각 회원 단체는 최소 1명 초대 3명까지의 대표가 총회에 참석하도록 한다. 각 회원단체는 총회에서 1개씩의 투표권을 가지며 해당 단체 대표가 선정한 한 사람이 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회원단체는 총회에서는 실체적인 투표 (substantive vote)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투표권을 부여 받은 사람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협정 혹은 본 규정과 절차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모든 안건은 단순 다수결로 결정한다.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각 회원단체는 매 총회에 다른 대표를 보내는 대신 적어도 한 대표는 최소 3회 이상 연속적으로 총회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 회원단체가 총회를 개최할 경우 주최국은 사무국과 협력하여 총회 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회원단체는 당해 단체가 파견하는 대표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모든 여행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총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주요 경비 (현지에서의 교통비, 회의장 사용 비용, 간단한 다과, 행정지원비, 기타 경비) 는 통상적으로 주최측이 부담한다.

4.0 의장

총회 종결 전에 각 회원단체는 한 회원단체를 선정하여 이 회원단체가 차기 회장을 지명하고 지명된 사람은 다음 총회가 끝날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전 회기에 이미 의장을 지명한 단체는 다음 회기의 의장을 지명할 수 없다.

의장의 역할은 총회를 주관하고 모든 업무가 본협정 및 본 규정과 절차에 따라 확실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장은 또한 협정이 순조롭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접촉과 논의의 중심이 되고 사무국이나 다른 단체의 "싸운딩 보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의장이 한 회원단체의 대표 역할을 수행할 때, 의장은 한 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가 가부 동수일 경우에도 의장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없다. 의장은 단체의 대표로 그 단체가 투표권을 행사할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만 투표권을 행사한다.

5.0 사무국

제 1차 총회를 종결하기 전에 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단체를 다수결로 지명하여 본 협정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사무국 업무를 수행할 단체는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 사무국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초 지명은 최소 4년간 유효하다. 4년 후에 열리는 총회를 종결하기 전에 회원단체는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지명을 2년간 더 연장할 것인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 지명은 매 2년마다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가 변경될 경우에도, 지명의 방법과 기간은 위와 동일하다. 최초 4년의 기간이 지난 후 2년씩 연장하여 최고 12년까지 이 지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의장과 사무국은 동일한 단체나 혹은 각각 다른 단체에서 선출될 수 있다.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총회에서 진행된 심의내용과 결정사항의 기록을 유지한다.
2. 회원단체간의 자료 교환과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3. 본협정의 website를 유지 관리한다.
4. 각 회원단체의 인증조건, 절차, 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의무를 수행한다.
5. 본 협정이 회원단체의 전문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기적으로 분석한다.
6. 본협정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절차 등에 관하여 회원단체에게 자문을 수행한다.
7. 건축가를 관장하는 단체나 기구가 본협정이 다루고 있는 건축전문자격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본협정을 선전하고 옹호하며 장려한다.

사무국 소요예산은 매 총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6.0 소통방법과 협정 홍보

사무국은 본협정의 웹싸이트를 유지한다. 웹싸이트에는 최근의 협정관계 문서; 회원단체의 최근 소식과 동향; 협정이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모든 프로그램의 명단; 연락처; 그때 그 때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소식과 자료 등을 싣는다.

통상적인 소통 수단은 이메일이며,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한 경우 전화회의 방법을 이용한다.

사무국은 성명 발표 등 방법을 통한 미디아를 통한 홍보의 책임이 있으며 세계적인 건축교육과 건축교육인증에 관계되는 단체나 조직이 본 협정과 협정의 원칙, 목적, 신규단체 가입절차 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책임이 있다.

사무국은 건축전문직을 관할하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본협정이 인정하는 건축전문학위/자격에 관하여 홍보하고 옹호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홍보의 성격이나 조치의 강도는 총회에서 회원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든 소통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

부록 A: 초기 정기실사 일정

2010년 7월 이전
멕시코 (COMAEA)
한국 (KAAB)

2011년 4월 이전
중국 (NBAA)

2012년 4월 이전
카나다 (CACB/CCCA)

2013년 3월 이전
미국 (NAAB)

2014년 4월 이전
영연방 (CAA)

2015년 4월 이전
오스트랄리아 (RAIA)

부록 B: 정기실사 보고서 양식

대외비

건축교육에 관한 캔버라 협정

보고서 종류: **정기실사**
정기실사 인증단체 이름:

실사 일자:

보고서 작성일자

상태/검토: (초안/최종/확인본)

B. 1. 서론

a) 요약

[전체적 실사활동의 요약: 누가 언제 어떤 처지에서 요청하였는지. 실사를 위해 방문한 곳 명시할 것 (대학, 단체 등)]

b) 실사위원

[실사위원 이름과 연락처]

B. 2. 준수상태

a) 회원단체를 위한 권고사항:

[가능한 권고사항의 종류]

1. 피실사 회원단체가 배출하는 결과는 현 회원단체가 배출하는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하므로 이 회원단체가 앞으로 6 년간 정회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혹은

2. 실사팀이 지적한 부족한 점과 우려되는 점을 다른 회원단체가 만족할 정도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6 개월 이내에 제출하겠다는 보고서를 이 회원단체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단체가 최장 3 년 동안 정회원자격을 유지하도록 받아드릴 것을 권고함.

혹은

3. 이 회원단체는 인증단체의 특성, 원칙, 인증기준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므로 즉시 **조건부회원 지위로 강등**시킬 것을 권고함.

b) 운영중인 교육 결과의 표준

[피 실사단체가 운영중인 교육의 표준이 본 협정의 회원단체와 동등함을 발견하였는지 여부를 기술]

c) 실질적 동등성을 위한 기준 준수

[본 보고서 B.3. 절의 매 기준마다 이 기준이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를 표시하고 의견을 적을 것]

B. 3. 특성, 원칙, 기준에 대한 실질적 동등성 평가

[아래 I-V 절의 매 항목마다 적절하게 준수되는지 여부를 '충족함/충족하지 못함' 으로 기재할 것

I. 일반적 특성

본협정의 회원단체 혹은 그 산하의 인증단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a) 건축계를 대표하며 건축실무계가 인정하며 인증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서 법적으로 건축전문직에 입문하는 조건으로 인정하는 (예: 건축사 시험자격 필요조건) 법적 지위를 가지는 정식 명칭 (당국, 기구, 혹은 협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학회, 전문직 단체, 혹은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관할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단체이어야 한다.

c) 과정, 절차가 확립되어 있고 그 활동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는, 활동적이고 건강한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d) 충분한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5 개 이상 프로그램 인증 실저과 7 년 이상 경험)

II. 합의된 공통원칙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합의된 공동 원칙에 구속된다.

a) 회원단체는 높은 수준의 전문직의 표준과 윤리와 목적을 가지고 운영한다.

b) 과정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c) 인증활동은 개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자신 있고 인증의 목표를 충족하는 확립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평가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d) 인증에 관계되는 사람은 인증, 교육, 실무에 관한 일에 충분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e) 인증은 학교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부여하는 것이다.

f) 인증은 동료평가에 의하여 진행되고 프로그램의 자체평가서, 방문실사, 학생들의 결과물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g) 인증을 결정하는 주된 기준은 학생들의 표준적인 성과물이다.

h) 물리적, 재정적, 인적, 정보자원 등은 학교 전체의 맥락에서 적절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III. 인증 기준

인증기준은 다음 항목을 적시 하여야 한다.

a) 교과과정 수업에 적절한 환경

b)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지도력

c)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수진

d) 건축실무 준비에 충분한 폭 넓은 교과 과정

e) 입학, 진급, 졸업 사정에 적절한 표준

f) 프로그램을 지탱할 수 있는 인적, 물리적, 재정적 자원

g) 인증자격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재평가 제도

h) 전문직에 입문하기에 적절한 기준으로서의 기술, 능력, 자세, 지식 등을 교육하기에 충분한 교육기간; 균형 잡힌 과목과 능력을 얻으려면 보통 최소 5 년 전일제 혹은 이와 동등한 기간이 소요된다.

IV. '고등교육 품질보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INQAAHE) 지침

품질보증외부기관 (EQAA)으로서의 인증단체(원)는 '좋은 실행' 지침의 중요한 원칙을 도입하여야 한다.

품질보장 외부기관은:

a) 문서화 된 사명 혹은 문화적,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한 목적을 가진다.

b) 주어진 사명과 방법론적 접근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외부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가진다

c) 변화하는 고등교육, 운영의 효율, 목표 달성을 위한 공헌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강조하는 자체활동의 품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d) 적용되는 법규나 품질보증외부기관(EQAA)의 문화적 문맥에 따라 이란 대중에게 홍보하고 대응한다.

e) 학교와 프로그램의 품질이나 품질 보증은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학무적 자율성, 독자성, 성실성 을 존중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단체와 합리적인 논의를 거친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의 품질 향상과 책임과 의무를 함양하기 위하여 공헌한다.

f) EQAA 가 학교에 기대하는 바를 문서화 한다.

g) 목적, 절차, 과정, 자체평가 과정에서 기대한 바 등을 설명하는 자체평가 문서를 보유한다. 이 문서는 또한 사용하는 표준, 결정의 기준, 보고서 양식,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필요한 다른 자료를 포함한다.

h) 사용되는 표준, 평가의 방법과 과정, 결정의 기준, 그리고 외부평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분명하게 기술한 외부평가에 관계되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

i)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평가서, 지식이 풍부한 동료평가인 혹은 적절한 법규에 위한 판결 등 외부의 참고 자료를 기술한 평가

j) 이의제기를 위한 적당한 방법과 정책을 가진다.

k) 가능하면, 좋은 본보기, 능력향상, 결정의 검토, 과도기 교육, 합동 프로젝트, 직원 교환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외부평가기관(EQAA)와 협력한다.

l) 고등교육의 수입 혹은 수출과 관계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V. UNESCO-UIA 건축교육헌장

적절한 국제적인 표준의 수용과 다각도의 접근을 장려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이 협정의 핵심적 원칙이다.

- 어느 인증단체에서나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표준과 동료평가 제도를 통한 평가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 마찬 가지로 중요한 사항은 다양성, 창조성, 그리고 발전을 장려하는 일이다.

인증단체는 학생들이 교육헌장에서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총체적인 기술과 지식, 그리고 역량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a) 심미적 기술적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축설계 창작 능력.

b) 건축의 역사와 이론, 건축에 관계되는 예술, 기술, 인문과학 분야의 적절한 지식

c) 건축설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미술에 대한 지식

d) 도시설계, 계획, 그리고 계획의 과정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적절하게 숙련된 기능

e) 사람과 건물, 건물과 주위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 등을 인간의 요구와 스케일(척도)에 대한 이해

f) 건축 전문직과 건축가의 사회적인 역할, 특히 사회적인 요인 등을 고려한 건축 프로그램의 작성에 관한 역할에 대한 이해

g)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조사 방법과 설계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

h) 건물 디자인과 관련되는 구조 디자인, 공사 방법, 공학적 문제에 대한 이해.

i) 실내공간을 외부 기후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리적 문제, 기술, 기능에 대한 적절한 지식.

j) 제한된 공사비와 건축법규의 제한 속에서 건물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기술

k) 건물의 개념을 실제적인 건물로 발전시키고 건물 계획이 전체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산업, 조직, 규정 그리고 절차에 대한 적절한 지식

l) 인간, 사회, 문화, 도시, 건축, 환경 등의 가치와 건축유산에 대한 책임의 인지

m) 생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환경을 보호하며 복원하는 수단에 대한

적절한 지식

n) 건축에 관계되는 시공 분야와 기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 기술에 대한 창조적 능력 개발

o) 프로젝트 재정, 프로젝트 관리, 공사비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의 제작/납품에 대한 적절한 지식

p) 건축을 배우는 과정에서 건축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에게 필수적인 연구 기법에 대한 훈련.

B. 4. 총평

a) 회원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하여
[제공된 문서에 대한 간결한 평가

b) 본협정의 기준(본 규정과 절차 1.0 절 참조)에 따르기 위한 인증체제의 변화 혹은 최근의 변경에 관하여

c) 회원단체의 다른 서류에 대하여

d) 회원단체가 시행한 인증방문에 대하여

e) 인증단체의 대표 면담 결과

f) 회원단체의 인증기준, 정책, 절차에 대한 총평
[간단한 요약]

g) 결론
[가까운 장래(1-5년)에 예상되는 중요한 쟁점을 적시한다]

B. 5. 첨부물

a) 실사 전에 제공된 문서
[제목만 적을 것; 내용은 전자문서로 첨부될 것임]

b) 실사 중에 추가로 제출된 문서

[제목만 적을 것; 내용은 전자문서로 첨부될 것임]

c) 실사 일정과 의제 및 회의
[개요만]

B. 6. 서명

실사위원 (실무자)

실사위원 (교육자)

보조위원

부록 C: 조건부회원 실사 보고서 양식

대외비

건축교육에 관한 캔버라 협정

보고서 종류: **지위전환실사**
피 지위전환실사 조건부회원단체 이름:

실사 일자:

보고서 작성일자

상태/검토: (초안/최종/확인본)

C. 1. 서론

a) 요약
[전체적 지위전환실사활동의 요약: 누가 언제 어떤 처지에서 요청하였는지. 지위전환실사를 위해 방문한 곳 명시할 것 (대학, 단체 등)]

b) 지위전환 실사위원
[실사위원 이름과 연락처]

C. 2. 준수상태

a) 회원단체를 위한 권고사항:
[가능한 권고사항의 종류]
1. 피실사 조건부회원단체가 배출하는 결과는 현 회원단체가 배출하는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하므로 이에 따라 이 조건부회원단체를 정회원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6 년간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혹은
2. 피 조건부회원단체는 현 회원단체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지 말고 앞으로 2 년간 더 **조건부회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회원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지는 않지만 차후 본협정의 실사를 고려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요구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b) 운영중인 교육 결과의 표준
[피 실사단체가 운영중인 교육의 표준이 본 협정의 회원단체와 동등함을 발견하였는지 여부를 기술]

c) 실질적 동등성을 위한 기준 준수
[본 보고서 C. 3. 절의 매 기준마다 이 기준이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를 표시하고 의견을 적을 것]

C. 3. 특성, 원칙, 기준에 대한 실질적 동등성 평가

[아래 I-V 절의 매 항목마다 적절하게 준수되는지 여부를 '충족함/충족하지 못함'으로 기재할 것

I. 일반적 특성

본협정의 회원단체 혹은 그 산하의 인증단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a) 건축계를 대표하며 건축실무계가 인정하며 인증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서 법적으로 건축전문직에 입문하는 조건으로 인정하는 (예: 건축사 시험자격 필요조건) 법적 지위를 가지는 정식 명칭 (당국, 기구, 혹은 협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학회, 전문직 단체, 혹은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관할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단체이어야 한다.

c) 과정, 절차가 확립되어 있고 그 활동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는, 활동적이고 건강한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d) 충분한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5 개 이상 프로그램 인증 실적과 7 년 이상 경험)

II. 합의된 공통원칙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합의된 공동 원칙에 구속된다.

a) 회원단체는 높은 수준의 전문직의 표준과 윤리와 목적을 가지고 운영한다.

b) 과정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c) 인증활동은 개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자신 있고 인증의 목표를 충족하는 확립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평가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d) 인증에 관계되는 사람은 인증, 교육, 실무에 관한 일에 충분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e) 인증은 학교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부여하는 것이다.

f) 인증은 동료에 의하여 진행되고 프로그램의 자체평가서, 방문실사, 학생들의 결과물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g) 인증을 결정하는 주된 기준은 학생들의 표준적인 성과물이다.

h) 물리적, 재정적, 인적, 정보자원 등은 학교 전체의 맥락에서 적절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III. 인증 기준

인증기준은 다음 항목을 적시 하여야 한다.

a) 교과과정 수업에 적절한 환경

b)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지도력

c)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수진

d) 건축실무 준비에 충분한 폭 넓은 교과 과정

e) 입학, 진급, 졸업 사정에 적절한 표준

f) 프로그램을 지탱할 수 있는 인적, 물리적, 재정적 자원

g) 인증자격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재평가 제도

h) 전문직에 입문하기에 적절한 기준으로서의 기술, 능력, 자세, 지식 등을 교육하기에 충분한 교육기간; 균형 잡힌 과목과 능력을 얻으려면 보통 최소 5 년 전일제 혹은 이와 동등한 기간이 소요된다.

IV. 고등교육 품질보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INQAAHE) 지침

품질보증외부기관 (EQAA)으로서의 인증단체(원)는 '좋은 실행' 지침의 중요한 원칙을 도입하여야 한다.

품질보장 외부기관은:

a) 문서화 된 사명 혹은 문화적,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한 목적을 가진다.

b) 주어진 사명과 방법론적 접근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외부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가진다

c) 변화하는 고등교육, 운영의 효율, 목표 달성을 위한 공헌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강조하는 자체활동의 품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d) 적용되는 법규나 품질보증외부기관(EQAA)의 문화적 문맥에 따라 이란 대중에게 홍보하고 대응한다.

e) 학교와 프로그램의 품질이나 품질 보증은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학무적 자율성, 독자성, 성실성 을 존중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단체와 합리적인 논의를 거친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의 품질 향상과 책임과 의무를 함양하는데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f) EQAA 가 학교에 기대하는 바를 문서화 한다.

g) 목적, 절차, 과정, 자체평가 과정에서 기대한 바 등을 설명하는 자체평가 문서를 보유한다. 이 문서는 또한 사용하는 표준, 결정의 기준, 보고서 양식,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필요한 다른 자료를 포함한다.

h) 사용되는 표준, 평가의 방법과 과정, 결정의 기준, 그리고 외부평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분명하게 기술한 외부평가에 관계되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

i)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평가서, 지식이 풍부한 동료평가인 혹은 적절한 법규에 위한 판결 등 외부의 참고 자료를 기술한 평가

j) 이의제기를 위한 적당한 방법과 정책을 가진다.

k) 가능하면, 좋은 본보기, 능력향상, 결정의 검토, 과도기 교육, 합동 프로젝트, 직원 교환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외부평가기관(EQAA)와 협력한다.

l) 고등교육의 수입 혹은 수출과 관계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V. UNESCO-UIA 건축교육헌장

적절한 국제적인 표준의 수용과 다각도의 접근을 장려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이 협정의 핵심적 원칙이다.

- 어느 인증단체에서나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표준과 동료평가 제도를 통한 평가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 마찬 가지로 중요한 사항은 다양성, 창조성, 그리고 발전을 장려하는 일이다.

인증단체는 학생들이 교육헌장에서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총체적인 기술과 지식, 그리고 역량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a) 심미적 기술적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축설계 창작 능력.

b) 건축의 역사와 이론, 건축에 관계되는 예술, 기술, 인문과학 분야의 적절한 지식

c) 건축설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미술에 대한 지식

d) 도시설계, 계획, 그리고 계획의 과정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적절하게 숙련된 기능

e) 사람과 건물, 건물과 주위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 등을 인간의 요구와 스케일(척도)에 대한 이해

f) 건축 전문직과 건축가의 사회적인 역할, 특히 사회적인 요인 등을 고려한 건축 프로그램의 작성에 관한 역할에 대한 이해

g)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조사 방법과 설계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

h) 건물 디자인과 관련되는 구조 디자인, 공사 방법, 공학적 문제에 대한 이해.

i) 실내공간을 외부 기후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리적 문제, 기술, 기능에 대한 적절한 지식.

j) 제한된 공사비와 건축법규의 제한 속에서 건물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기술

k) 건물의 개념을 실제적인 건물로 발전시키고 건물 계획이 전체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산업, 조직, 규정 그리고 절차에 대한 적절한 지식

l) 인간, 사회, 문화, 도시, 건축, 환경 등의 가치와 건축유산에 대한 책임의 인지

m) 생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환경을 보호하며 복원하는 수단에 대한 적절한 지식

n) 건축에 관계되는 시공 분야와 기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 기술에 대한 창조적 능력 개발

o) 프로젝트 재정, 프로젝트 관리, 공사비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의 제작/납품에 대한 적절한 지식

p) 건축을 배우는 과정에서 건축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에게 필수적인 연구 기법에 대한 훈련.

C. 4. 총평

a) 신청 조건부회원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하여
[제공된 문서에 대한 간결한 평가

b) 본협정의 기준(본 규정과 절차 1.0 절 참조)에 따르기 위한 인증체제의 변화 혹은 최근의 변경에 관하여

c) 회원단체의 다른 서류에 대하여

d) 회원단체가 시행한 인증방문에 대하여

e) 인증단체의 대표 면담 결과

f) 회원단체의 인증기준, 정책, 절차에 대한 총평
[간단한 요약]

g) 결론
[가까운 장래(1-5년)에 예상되는 중요한 쟁점을 적시한다]

C. 5. 첨부물

a) 실사 전에 제공된 문서
[제목만 적을 것; 내용은 전자문서로 첨부될 것임]

b) 실사 중에 추가로 제출된 문서
[제목만 적을 것; 내용은 전자문서로 첨부될 것임]

c) 실사 일정과 의제 및 회의
[개요]

C. 6. 서명

실사위원 (실무자)

실사위원 (교육자)

보조위원

부록 D: 자문 실사 보고서 양식

대외비

건축교육에 관한 캔버라 협정

보고서 종류: **자문실사**
자문실사 인증단체 이름:

실사 일자:

보고서 작성일자

상태/검토: (초안/최종/확인본)

D. 1. 서론

a) 요약
[전체적 실사활동의 요약: 누가 언제 어떤 처지에서 요청하였는지. 실사를 위해 방문한 곳 명시할 것 (대학, 단체 등)]

b) 실사위원
[실사위원 이름과 연락처]

D. 2. 준수상태

a) 피 자문단체를 위한 권고사항:
[권고의 종류는; 조건부회원단체 지위 신청, 추가 발전, 정회원단체의 지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b) 운영중인 교육 결과의 표준
[피 실사단체가 운영중인 교육의 표준이 본 협정의 회원단체와 동등함을 발견하였는지 여부를 기술]

c) 실질적 동등성을 위한 기준 준수
[아래 D. 3. 절의 기준 하나 하나가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를 표시하고 의견을 적을 것]

D. 3. 특성, 원칙, 기준에 대한 실질적 동등성 평가

[아래 I-V 절의 매 항목마다 적절하게 준수되는지 여부를 '충족함/충족하지 못함' 으로 기재할 것

I. 일반적 특성

본협정의 회원단체 혹은 그 산하의 인증단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a) 건축계를 대표하며 건축실무계가 인정하며 인증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서 법적으로 건축전문직에 입문하는 조건으로 인정하는 (예: 건축사 시험자격 필요조건) 법적 지위를 가지는 정식 명칭 (당국, 기구, 혹은 협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학회, 전문직 단체, 혹은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관할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단체이어야 한다.

c) 과정, 절차가 확립되어 있고 그 활동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는, 활동적이고 건강한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d) 충분한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5 개 이상 프로그램 인증 실저과 7 년 이상 경험)

II. 합의된 공통원칙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합의된 공동 원칙에 구속된다.

a) 회원단체는 높은 수준의 전문직의 표준과 윤리와 목적을 가지고 운영한다.

b) 과정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c) 인증활동은 개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자신 있고 인증의 목표를 충족하는 확립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평가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d) 인증에 관계되는 사람은 인증, 교육, 실무에 관한 일에 충분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e) 인증은 학교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부여하는 것이다.

f) 인증은 동료에 의하여 진행되고 프로그램의 자체평가서, 방문실사, 학생들의 결과물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g) 인증을 결정하는 주된 기준은 학생들의 표준적인 성과물이다.

h) 물리적, 재정적, 인적, 정보자원 등은 학교 전체의 맥락에서 적절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III. 인증 기준

인증기준은 다음 항목을 적시 하여야 한다.

a) 교과과정 수업에 적절한 환경

b)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지도력

c)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수진

d) 건축실무 준비에 충분한 폭 넓은 교과 과정

e) 입학, 진급, 졸업 사정에 적절한 표준

f) 프로그램을 지탱할 수 있는 인적, 물리적, 재정적 자원

g) 인증자격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재평가 제도

h) 전문직에 입문하기에 적절한 기준으로서의 기술, 능력, 자세, 지식 등을 교육하기에 충분한 교육기간; 균형 잡힌 과목과 능력을 얻으려면 보통 최소 5 년 전일제 혹은 이와 동등한 기간이 소요된다.

IV. 고등교육 품질보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INQAAHE) 지침

품질보증외부기관 (EQAA)으로서의 인증단체(원)는 '좋은 실행' 지침의 중요한 원칙을 도입하여야 한다.

품질보장 외부기관은:

a) 문서화 된 사명 혹은 문화적,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한 목적을 가진다.

b) 주어진 사명과 방법론적 접근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외부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가진다

c) 변화하는 고등교육, 운영의 효율, 목표 달성을 위한 공헌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강조하는 자체활동의 품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d) 적용되는 법규나 품질보증외부기관(EQAA)의 문화적 문맥에 따라 이란 대중에게 홍보하고 대응한다.

e) 학교와 프로그램의 품질이나 품질 보증은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학무적 자율성, 독자성, 성실성 을 존중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단체와 합리적인 논의를 거친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의 품질 향상과 책임과 의무를 함양하는데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f) EQAA 가 학교에 기대하는 바를 문서화 한다.

g) 목적, 절차, 과정, 자체평가 과정에서 기대한 바 등을 설명하는 자체평가 문서를 보유한다. 이 문서는 또한 사용하는 표준, 결정의 기준, 보고서 양식,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필요한 다른 자료를 포함한다.

h) 사용되는 표준, 평가의 방법과 과정, 결정의 기준, 그리고 외부평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분명하게 기술한 외부평가에 관계되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

i)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평가서, 지식이 풍부한 동료평가인 혹은 적절한 법규에 위한 판결 등 외부의 참고 자료를 기술한 평가

j) 이의제기를 위한 적당한 방법과 정책을 가진다.

k) 가능하면, 좋은 본보기, 능력향상, 결정의 검토, 과도기 교육, 합동 프로젝트, 직원 교환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외부평가기관(EQAA)와 협력한다.

l) 고등교육의 수입 혹은 수출과 관계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V. UNESCO-UIA 건축교육헌장

적절한 국제적인 표준의 수용과 다각도의 접근을 장려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이 협정의 핵심적 원칙이다.

- 어느 인증단체에서나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표준과 동료평가 제도를 통한 평가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 마찬 가지로 중요한 사항은 다양성, 창조성, 그리고 발전을 장려하는 일이다.

인증단체는 학생들이 교육헌장에서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총체적인 기술과 지식, 그리고 역량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a) 심미적 기술적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축설계 창작 능력.

b) 건축의 역사와 이론, 건축에 관계되는 예술, 기술, 인문과학 분야의 적절한 지식

c) 건축설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미술에 대한 지식

d) 도시설계, 계획, 그리고 계획의 과정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적절하게 숙련된 기능

e) 사람과 건물, 건물과 주위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 등을 인간의

요구와 스케일(척도)에 대한 이해

f) 건축 전문직과 건축가의 사회적인 역할, 특히 사회적인 요인 등을 고려한 건축 프로그램의 작성에 관한 역할에 대한 이해

g)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조사 방법과 설계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

h) 건물 디자인과 관련되는 구조 디자인, 공사 방법, 공학적 문제에 대한 이해.

i) 실내공간을 외부 기후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리적 문제, 기술, 기능에 대한 적절한 지식.

j) 제한된 공사비와 건축법규의 제한 속에서 건물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기술

k) 건물의 개념을 실제적인 건물로 발전시키고 건물 계획이 전체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산업, 조직, 규정 그리고 절차에 대한 적절한 지식

l) 인간, 사회, 문화, 도시, 건축, 환경 등의 가치와 건축유산에 대한 책임의 인지

m) 생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환경을 보호하며 복원하는 수단에 대한 적절한 지식

n) 건축에 관계되는 시공 분야와 기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 기술에 대한 창조적 능력 개발

o) 프로젝트 재정, 프로젝트 관리, 공사비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의 제작/납품에 대한 적절한 지식

p) 건축을 배우는 과정에서 건축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에게 필수적인 연구 기법에 대한 훈련.

D. 4. 자문내용

D. 5. 총평

a) 피 자문실사 인증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하여
[제공된 문서에 대한 간결한 평가

b) 피 자문실사 인증단체가 직면한 문제점을 적시

c) 피 자문실사 인증단체의 다른 서류에 대하여

d) 피 자문실사 인증단체가 시행한 인증방문에 대하여

e) 피 자문실사 인증단체의 대표 면담 결과

f) 피 자문실사 회원단체의 인증기준, 정책, 절차에 대한 총평
[간단한 요약]

g) 결론
[가까운 장래(1-5년)에 예상되는 중요한 쟁점을 적시한다]

D. 6. 첨부물

a) 자문실사 전에 제공된 문서
[제목만 적을 것]

b) 자문실사 중에 추가로 제출된 문서
[제목만 적을 것]

c) 실사 일정과 의제 및 회의
[개요]

D. 7. 서명

자문실사위원

보조위원

부록 E: 실질적 동등성 (Substantial Equivalency)의 성격, 원칙, 기준

I. 일반적 특성

본협정의 회원단체 혹은 그 산하의 인증단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a) 건축계를 대표하며 건축실무계가 인정하며 인증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서 법적으로 건축전문직에 입문하는 조건으로 인정하는 (예: 건축사 시험자격 필요조건) 법적 지위를 가지는 정식 명칭 (당국, 기구, 혹은 협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학회, 전문직 단체, 혹은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관할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단체이어야 한다.

c) 과정, 절차가 확립되어 있고 그 활동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는, 활동적이고 건강한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d) 충분한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5 개 이상 프로그램 인증 실저과 7 년 이상 경험)

II. 합의된 공통원칙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합의된 공동 원칙에 구속된다.

a) 회원단체는 높은 수준의 전문직의 표준과 윤리와 목적을 가지고 운영한다.

b) 과정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c) 인증활동은 개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자신 있고 인증의 목표를 충족하는 확립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평가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d) 인증에 관계되는 사람은 인증, 교육, 실무에 관한 일에 충분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e) 인증은 학교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부여하는 것이다.

f) 인증은 동료평가에 의하여 진행되고 프로그램의 자체평가서, 방문실사, 학생들의 결과물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g) 인증을 결정하는 주된 기준은 학생들의 표준적인 성과물이다.

h) 물리적, 재정적, 인적, 정보자원 등은 학교 전체의 맥락에서 적절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III. 인증 기준

인증기준은 다음 항목을 적시 하여야 한다.

a) 교과과정 수업에 적절한 환경

b)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지도력

c)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수진

d) 건축실무 준비에 충분한 폭 넓은 교과 과정

e) 입학, 진급, 졸업 사정에 적절한 표준

f) 프로그램을 지탱할 수 있는 인적, 물리적, 재정적 자원

g) 인증자격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재평가 제도

h) 전문직에 입문하기에 적절한 기준으로서의 기술, 능력, 자세, 지식 등을 교육하기에 충분한 교육기간; 균형 잡힌 과목과 능력을 얻으려면 보통 최소 5 년 전일제 혹은 이와 동등한 기간이 소요된다.

IV. 고등교육 품질보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INQAAHE) 지침

품질보증외부기관 (EQAA)으로서의 인증단체(원)는 '좋은 실행' 지침의 중요한 원칙을 도입하여야 한다.

품질보장 외부기관은:

a) 문서화 된 사명 혹은 문화적,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한 목적을 가진다.

b) 주어진 사명과 방법론적 접근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외부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가진다

c) 변화하는 고등교육, 운영의 효율, 목표 달성을 위한 공헌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강조하는 자체활동의 품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d) 적용되는 법규나 품질보증외부기관(EQAA)의 문화적 문맥에 따라 이란 대중에게 홍보하고 대응한다.

e) 학교와 프로그램의 품질이나 품질 보증은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학무적 자율성, 독자성, 성실성 을 존중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단체와 합리적인 논의를 거친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의 품질 향상과 책임과 의무를 함양하기 위하여 공헌한다.

f) EQAA 가 학교에 기대하는 바를 문서화 한다.

g) 목적, 절차, 과정, 자체평가 과정에서 기대한 바 등을 설명하는 자체평가 문서를 보유한다. 이 문서는 또한 사용하는 표준, 결정의 기준, 보고서 양식,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필요한 다른 자료를 포함한다.

h) 사용되는 표준, 평가의 방법과 과정, 결정의 기준, 그리고 외부평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분명하게 기술한 외부평가에 관계되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

i)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평가서, 지식이 풍부한 동료평가인 혹은 적절한 법규에 위한 판결 등 외부의 참고 자료를 기술한 평가

j) 이의제기를 위한 적당한 방법과 정책을 가진다.

k) 가능하면, 좋은 본보기, 능력향상, 결정의 검토, 과도기 교육, 합동 프로젝트, 직원 교환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외부평가기관(EQAA)와 협력한다.

l) 고등교육의 수입 혹은 수출과 관계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V. UNESCO-UIA 건축교육헌장

적절한 국제적인 표준의 수용과 다각도의 접근을 장려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이 협정의 핵심적 원칙이다.

- 어느 인증단체에서나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표준과 동료평가 제도를 통한 평가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 마찬 가지로 중요한 사항은 다양성, 창조성, 그리고 발전을 장려하는 일이다.

인증단체는 학생들이 교육헌장에서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총체적인 기술과 지식, 그리고 역량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a) 심미적 기술적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축설계 창작 능력.

b) 건축의 역사와 이론, 건축에 관계되는 예술, 기술, 인문과학 분야의 적절한 지식

c) 건축설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미술에 대한 지식

d) 도시설계, 계획, 그리고 계획의 과정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적절하게 숙련된 기능

e) 사람과 건물, 건물과 주위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 등을 인간의 요구와 스케일(척도)에 대한 이해

f) 건축 전문직과 건축가의 사회적인 역할, 특히 사회적인 요인 등을 고려한 건축 프로그램의 작성에 관한 역할에 대한 이해

g)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조사 방법과 설계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

h) 건물 디자인과 관련되는 구조 디자인, 공사 방법, 공학적 문제에 대한 이해.

i) 실내공간을 외부 기후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리적 문제, 기술, 기능에 대한 적절한 지식.

j) 제한된 공사비와 건축법규의 제한 속에서 건물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기술

k) 건물의 개념을 실제적인 건물로 발전시키고 건물 계획이 전체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산업, 조직, 규정 그리고 절차에 대한 적절한 지식

l) 인간, 사회, 문화, 도시, 건축, 환경 등의 가치와 건축유산에 대한 책임의 인지

m) 생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환경을 보호하며 복원하는 수단에 대한 적절한 지식

n) 건축에 관계되는 시공 분야와 기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 기술에 대한

창조적 능력 개발

o) 프로젝트 재정, 프로젝트 관리, 공사비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의 제작/납품에 대한 적절한 지식

p) 건축을 배우는 과정에서 건축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에게 필수적인 연구 기법에 대한 훈련.

부록 F: 용어의 정의

Academic award:
Accreditation/validation/recognition:
Brief (in the sense of what the US would call a program for a building design)
Desktop
Facilitator
Program
Signatory system
Suitable environment
Qualifications

용어의 번역

the Accord: 본협정
Advisory visit: 자문실사
agencies: 기구,
authorities: 당국,
compliance: 준수상태
executive summary: 요약
good practice:
institutes: 협회
Monitor: 감시
Motion: 제안
Nomination: 지명 혹은 추천
peer: 동료평가
principle: 원칙
Provisional Member: 조건부회원
Provisional Status: 조건부회원 지위
Review: 인증실사, 회원단체실사, 혹은 지위전환실사
Substantial Equivalency 실질적 동등
Substantive 독립적, 실질적
system being reviewed: 피실사회원단체
피실사단체

transitional Education; 과도기 교육
commentary: 총평
unanimous minus one vote: 한 표를 제외한 만장일치, 만장일치 (한 표 제외)